

定 款

제정 2003.4.18
개정 2006.4.24
개정 2009.3.25
개정 2010.11.19
개정 2012. 7. 2
개정 2016. 1. 4
개정 2016. 9. 1

社團法人 韓國著作權團體聯合會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하 “본 연합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약칭 KOFOCO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합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합회는 회원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저작권 관리의 효율화와 개선, 저작물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

제4조(사업)

본 연합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권익 옹호 <개정 2016.9.1.>
2. 저작권의 효율적인 집중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3. 저작물의 이용질서 확립 및 이용원활화를 위한 사업
4. 법률의 제·개정에 관한 건의
5.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
6. 각종 잡지·도서의 간행 및 홍보 <개정 2012.7.2.>
7. 저작권 권리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구 운영
8. 기타 본 연합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수익사업)

본 연합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 ① 본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1.>
 1. 정 회 원 : 본 연합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찬동하는 법인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하는 법인으로 한다.
 2. 준 회 원 : 본 연합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찬동하는 정회원이 아닌 법인으로, 이사장 또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입회하는 법인으로 한다. 준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본 연합회의 정회원을 민법상의 사원으로 한다.

제7조(가입절차 · 입회금 및 회비)

-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법인은 사무처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1.>
- ②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법인은 이사장 또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사무처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1.>
- ③ 회원은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 연합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개정 2016.9.1.>
- ② 회원은 본 연합회가 발간하는 기관지 및 도서의 우선적인 배포를 받을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연합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자격상실)

- ① 본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회원인 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 <개정 2016.9.1.>
 3. 제명
- ② 전항 제1호에 의해 탈퇴하려고 하는 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소정의 탈퇴신고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명한다.
 - 1. 본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2. 본 연합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② 징계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및 사무처 등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 1인
- 2. 부이사장 : 2인 이내
- 3. 이 사 : 11인 이상 20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 4. 감 사 : 2인

제13조(임원의 선출)

- ① 정회원 또는 정회원 법인의 장이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권한을 위임한 임원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12.7.2., 2016.1.4., 2016.9.1.>
- ② 이사 정원 중 3인 이내의 인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저작권 등 문화산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총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1.>
- ③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선출한다.
- ④ 감사 2인 중 1인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1인은 비회원으로 회계학 전문인 중에서 이사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종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60일 내지 30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 연합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9.1.>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에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6.9.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그 형이 확정된 자
 7. 제14조 각 호에 따라 임원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당연직 이사가 본 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9.1.>

제16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고 본 연합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대외업무·대내관리 업무를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7.2.>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연합회의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감사
 2. 제1호의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2.>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본 연합회 이사장, 부이사장은 3년으로 하며 중임에 한한다.
- ②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2.>
- ③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이사가 그 재임기간 내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으로 선출된 경우, 당연직 이사의 재임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본조 제1항에

따른 이사장·부이사장의 임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설 2016.1.4.>

제19조(운영위원회)

- ① 본 연합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본 연합회 사무총장과 정회원 법인의 사무총(국)장 중에서 이사회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9.1.>
-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정회원 법인의 장 또는 정회원 법인의 장이 위임한 임원으로 한다. <개정 2016.9.1.>
-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세칙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고문)

- ① 본 연합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1조(사무처)

- ① 본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사무처에 필요한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9.1.>
- ⑦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직제, 인사,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의 2(저작권보호센터) <신설 2012. 7. 2.>

- ① 본 연합회 내에 저작물 보호활동 수행을 위한 저작권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9.1.>
- ② 저작권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9.1.>
- ③ 삭제 <2016.9.1.>
- ④ 삭제 <2016.9.1.>
- ⑤ 삭제 <2016.9.1.>

제4장 총회

제22조(총회)

총회는 본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의장 및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긴급시는 3일전)까지 문서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장은 부이사장이 하며, 부이사장이 기피할 때에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이사장의 제척사유가 있을 때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사업계획의 승인
3. 본 연합회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본 연합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본 정관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 제명은 재적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이 아닌 총회에서 이사로 위촉된 자가 의장인 경우, 그 의장은 의결권이 없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③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결의권을 위임할 수 없으며,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원선출 및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28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연합회와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의결권의 위임)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저작권담당 책임자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위임을 받은 자는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통보)

총회에서 결의된 의결사항은 회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31조(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사무처에서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이를 보관한다. <개정 2016.9.1.>

제5장 이사회

제3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33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긴급시는 3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장은 부이사장이 하며, 부이사장이 기피할 경우에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2.>

제36조(제척사유)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연합회와 이해가 상반될 때

제37조(이사회 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의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 ① 본 연합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두 종류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로 기입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④ 기부금품으로 기부자의 지정이 있는 것은 그 지정에 따른다.

제39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① 본 연합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본 연합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수입금)

본 연합회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1.>

1. 본 연합회의 설립당시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로부터 승계 받은 별지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입회금 및 회비
3. 사업에 따르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5. 각종 기부금 및 찬조금
6. 기타 수입

제40조의2(기부금)

법인이 정한 정관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1조(자산의 관리)

본 연합회의 자산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에서 관리하고, 기본재산 중 현금은 이사회 의결로 유가증권을 구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정기예금 등 확실한 방법으로 증식시키기로 한다.

제42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본 연합회의 사업계획 및 이에 수반하는 수지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무처에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변경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제43조(사업보고 및 결산)

- ① 본 연합회의 수지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무처에서 작성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및 회원이동사항보고서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 연합회의 수지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또는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제44조(회계연도)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5조(감사)

감사는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46조(정관의 변경)

본 연합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참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1.>

제47조(해산)

- ① 본 연합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본 연합회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본 연합회와 유사한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제48조(정관시행 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03. 4.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래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에 속하던 회원 및 권리 재무 일체는 본 연합회에서 승계한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연합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 포함으로 관련 내용 삭제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연합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 포함으로 관련 내용 삭제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 개인정보 포함으로 관련 내용 삭제

부 칙(2006. 4.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관련 경과조치)

제18조(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9.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